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43

2016년 9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12. 서울특별시장 제출

2. 회부일자 : 2016. 8. 16.

3.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9월 5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경환 복지본부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상담 및 알선, 일자리 개발, 현장훈련, 사후 지도 등의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며,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위탁 기간이 만료('16. 12. 31)됨에 따라,
- 나.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법인 등에 센터 운영을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센 터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대치동)

○ 시설규모 : 연면적 674.64㎡(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3~5층)

※ 운영인력 : 23명(원장 1, 팀장 4, 일반직원 18)

○ 위탁기간 : 3년 (2017. 1. 1.~2019. 12. 31)

○ 위탁사무

- 장애인 일자리 연계: 취업기관 간 정보·인력 연계, 직업능력평가 등

- 장애인 일자리 개발 : 장애인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구인업체 개발 등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취업장애인 사후관리, 장기고용전략 수립 등

- 기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등

※ '13.8.7 준공된 행복서비스센터(연면적 1,669.48m²) 건물관리 위탁 포함

- 소요예산 : 1,671백만원(2016년 수준, 전액 시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항(장애인 고용촉진 추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장애인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 장애특성 맞춤형 취업상담·알선, 구인업 체 발굴, 사례관리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 함이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 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 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
-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9조(취업 후 적응 지도)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 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 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 무내용) 제1호, 제9호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동의안의 취지

- 장애인의 취업기회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2009년 부터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이나 2016. 12. 31. 위탁 기간 만료 예정임.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1)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이력

구 분	1차	2차	3차
수탁기관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기 간	'09. 4. 1~'10. 12. 31 (1년 9월)	'11. 1. 1~'13. 12. 31 (3년)	'14. 1. 1~'16. 12. 31 (3년)
선정방법	공개모집	재계약	재계약

2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제2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더불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 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상기 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 장애특성 맞춤형 취업상담·알선, 구인업체 발굴, 사례관리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민간위탁의 타당성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에서도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 등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징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²)제1항제3호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²⁾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장애인의 특수성에 맞춘 취업상담·알선, 구인업체 발굴, 사례관리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 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 사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 방식의 적정성 검토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장애인 일자리 연계: 취업기관 간 정보·인력 연계. 직업능력평가 등
 - ② 장애인 일자리 개발 : 장애인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구인업체 개발 등
 - ③ 장애인 일자리 지원:취업장애인 사후관리, 장기고용전략 수립 등
 - ④ 기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등
 - ※ '13.8.7 준공된 행복서비스센터(연면적 1,669.48m²) 건물관리 위탁 포함
- 상기와 같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장애인의 능력 및 특성 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그 특성상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해당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 및 전 문적 서비스 기술을 지닌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할 것 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V. 토론요지: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343

제출년월일: 2016년 8월 12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상담 및 알선, 일자리 개발, 현장훈련, 사후지도 등의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우리 시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나.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법인 등에 이 센터 운영을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 터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나. 센터개요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대치동)

- 규모 : 연면적 $674.64m^2$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3\sim5$ 층)

- 다. 운영인력: 23명(원장 1, 팀장 4, 일반직원 18)
- 라. 위탁기간: 2017. 1. 1.~2019. 12. 31(3년)

마. 위탁사무

- 장애인 일자리 연계 : 취업기관 간 정보·인력 연계, 직업능력평가 등
- 장애인 일자리 개발 : 장애인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구인업체 개발 등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취업장애인 사후관리, 장기고용전략 수립 등
- 기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등 ※ '13.8.7 준공된 행복서비스센터(연면적 1.669.48m²) 건물관리 위탁 포함

바. 민간위탁의 필요성

- 장애인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 장애특성 맞춤형 취업상담·알선, 구인업체 발굴, 사례관리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케 함이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사. 소요예산 : 1,671백만원(2016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항(장애인 고용촉진 추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김수철(☎ 2133-7466)